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16 발의연월일 : 2020. 11. 17.

발 의 자:고영인·서동용·김영호

이용빈 · 최혜영 · 유정주

이동주 · 장철민 · 김경만

김회재 · 맹성규 · 김승원

안규백 • 윤재갑 • 강득구

박성준 · 홍성국 의원

(17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·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"의무인증시설"이라 함)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고 있음.

그러나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증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제3항 후단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739호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 만료 시설에 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739호	법률 제16739호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	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
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	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	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인증) ①·② (생 략)	인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	
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	
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	
받아야 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
	받은 대상시설은 제10조의3에
	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
	받아야 한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